방위사업청

보 도 자 료

대변인실
☎ 02-2079-6021~4
www.dapa.go.kr

배포일시 : 2020. 3. 20.(금) 08:00 총 3 쪽

담당부서 : 기술보호과(기술서기관 전준범 / ☎ 02-2079-6970)

보도일시 : 본 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
방사청, 방위산업기술 유출 · 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

- 신고 즉시 방사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어 신속 대응 -

○ 방위사업청(청장 왕정홍)은 3월 20일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'방위산업기술 유출·침해사고 신고센터'(이하 '신고센터')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.

* 방위산업기술 : 방위사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

○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(업체)은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*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: 국내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방산 수출 대상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(2015. 12. 29. 제정, 2016. 6. 30. 시행)

○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(국정원 111,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)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.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(업체)이 방위사업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·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. 신고 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되어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다.

○ 신고센터는 방위사업청 누리집(http://www.dapa.go.kr) 상단의 '민원·참여' 메뉴에 있는 '신고센터'를 선택하면 된다.

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○ 한편,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·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 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'방위산업기술 유출·침해사고 대응 매뉴얼'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.

○ 방위사업청 김상모(고위공무원) 국방기술보호국장은 "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서,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·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<끝>

붙 임 **방위산업기술 유출 ·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사고 유형**

○ 방위산업기술 유출·침해사고 대응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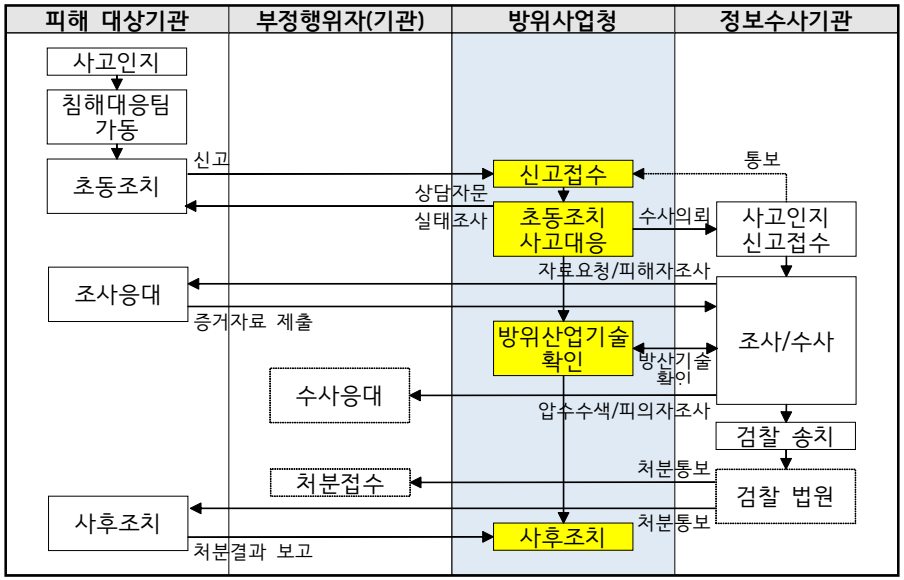

○ 방위산업기술 유출·침해사고 유형

유 형	예 시
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	•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직 또는 해외 창업 • 퇴사자가 경쟁업체에 기술 유출 • 외국인 직원이 기술 유출
정보시스템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	• APT 공격, 악성코드 등으로 기술 유출 • 랜섬웨어 공격으로 파일 암호화하여 기술 침해 등
정보통신시스템 사용 부주의에 의한 기술 유출	• 이메일, 팩스, 무선공유기, P2P 등의 사용 부주의로 기술 유출 • 노트북, USB 등을 외부에서 분실
불법 수출에 의한 기술 유출	• 국가의 수출 승인 없이 방산물자 및 방위산업기술을 수출
기업합병, 기술이전 시 기술 유출	• 정부 승인 또는 허가 없이 합병 또는 기술이전 • 계약 협상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공유했으나 계약이 파기되어 기술 유출
보안성 검토 미흡에 의한 기술 유출	• 논문, 특허, 강연자료, 홍보자료 등의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기술 공개 • 저장장치, 운용장비 정비 시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기술자료 유출
기타	• 군 기관 등 사칭하여 기술 자료 요청 • 도청을 통한 기술 유출 • 부도, 폐업 시 기술 유출